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 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를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폐기물의 종류와"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장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자(이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명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의 부과·징수"를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제3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구역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가능품·다량폐기물·다량배출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대행생활 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5조(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등)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종량제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그 지역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규격봉투규격)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기준, 규격봉투대금의 수납방법 등도 또한 같다.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명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기준 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1.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 및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와 처리비는 매월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가산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規約中變更規約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31分)

○委員長 李敏國 議事日程 第2項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規約中變更規約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淸掃事業本部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滿場一致로 通過시켜 주신 委員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規約中變更規約同意案에대한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아 우리 市에서는 1978年부터 使用하던 蘭芝島 쓰레기 埋立場이 飽和狀態로 쓰레기 埋立이 限界에 도달함으로써 84年부터 京畿道地域에 埋立場 敷地確保를 推進하였으나 地域住民들의 극심한 反撥과 京畿道와의 이해상충으로 우리 市 單獨의 埋立場 建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 金浦郡 黔丹面 一帶 현재의 埋立場을 首都圈 廣域 쓰레기 埋立場으로 決定하여 敷地補償費는 우리 市와 環境管理公團이 負擔하고, 第1工區 建設事業費는 서울市, 仁川市, 京畿道 等 3個 市·道가 負擔하여 建設하였으며, 首都圈埋立地의 運營管理를 위하여 91年 11月 7日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을 設立하고 같은 해 12月 7日 3個 市·道議會 議員 네 분과 市·道의 關係局長을 委員으로 하는 組合會議를 구성하여 運營 中에 있으나 그 동안 埋立地 주변 地域住民의 집단적 쓰레기 搬入 저지와 여러가지 要求事項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指導와 支援에 힘입어 우리 市에서 매일 生活쓰레기와 建築物 廢材類 및 下水處理 오니 등 2萬 6,000餘 톤을 首都圈埋立地로 搬出 處理하고 있으며, 이는 首都圈埋立地에 搬入되는 전체 쓰레기의 74%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그 동안 委員님들의 埋立地 運營에 관한 깊은 배려의 덕으로 사료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提案하게 된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規約中變更規約同意案은 그 동안 組合長職은 3個 市·道의 副團體長이 겸임하면서 2年씩 순차적으로 遂行하도록 되어 있어 組合業務에 전념하지 못 하며, 늘어나는 組合業務에 효율적으로 對處하지 못 하는 등 組合運營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지난번 우리 市議會 第11回 定期會와 第73回 臨時會에서 議決하여 주셨던 組合長을 2級 내지 3級 別定職 公務員으로 하여 常勤하도록 하고 組合委員을 7名에서 12名으로 增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